

[별표]

범칙금의 양정기준(제2조 관련)

해당 법조문	범칙금 부과대상	범칙금 양정기준액
1. 법 제355조 제1항제1호	법 제1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 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(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)	1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
2. 법 제355조 제1항제2호	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 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·항공 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(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)	1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
3. 법 제355조 제1항제3호	법 제158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·항공기 또 는 그 밖의 교통기관을 제공한 자(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행위에 한한다)	1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이하
4. 법 제355조 제2항	법 제3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영 리목적이 아닌 자)	3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
5. 법 제355조 제3항제1호	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	2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
6. 법 제355조 제3항제2호	법 제158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3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	200만원 이상 2,000만원 이하
7. 법 제355조 제4항	법 제159조를 위반한 자	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8. 법 제355조 제5항	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 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	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
9. 법 제360조 제1항	법 제3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	본죄에 해당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.
10. 법 제360조 제2항	법 제3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	정범에 해당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.
11. 법 제361조 (양벌규정)	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으로서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5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	그 위반행위를 한 자의 범칙금 기준 액과 같음.

